

股本會社

Kobon Hoesa—The old title of korean stock corporation

鄭 熙 詰*

I. 韓末의 會社制度

최근에 實로 보기도문 冊子를 집하게 되었다. 李冕宇 講述 「會社法」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나로서는 이러한 책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므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入手한 경위는 本大學講師인 崔鍾庫君이 安國洞의 某古本商에서 發見하여 買入한 것을, 本校助敎로 있는 吳守根君을 통하여 나에게 供覽된 것에서 비롯된다. 著述의 年度도 확실치 않으나 그 序文에서 「我國에 在하는 會社組織이 漸次發達하여도 此에 關한 法律의 制定은 尙無하고 但 典當會社規則, 電氣會社條例, 銀行規則, 砲肆規則 等の 不完全한 單行法으로 處理함에 不過하니 今日에 商法을 編纂하여 會社法을 規定함이 必要함은 多辨을 不俟할 바——라. 餘의 寡見으로 今此 會社法을 講述함에 當하여 完全한 法典이 曾無함으로 往往 日本法典을 引用하고 歐美法規를 參據하여 說明함은 事勢의 得已치 못할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韓日合併 이전이며, 우리나라에 會社法이라는 것이 制定되기 이전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會社라는 制度가 法制化된 것은 언제인가. 1905(光武9年) 12月 18日 法律 第6號 「私設鐵道條例」가 第2條에서 起業趣旨書의 記載事項을 規定하면서 第1號에는 「社名及本社并創立事務所所在地名」, 第4號에 「資本金總額及總株數并每株金額」, 第6號에 「發起人姓名住所及發起人自擔한 株數」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鐵道運輸業을 株式會社組織으로 할 것을 豫定하고 있는 것이 그 篤矢가 아닌가 짐작된다. 同條例 제6조, 제16조, 제28조 이하에서 「會社」라는 것도 株式會社를 指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會社制度로서는 株式會社制度가 최초로 導入된 것이다.⁽¹⁾ 그러나 이 條例에 의하여 어떠한 私設鐵道會社가 언제 設立되었는지는 명백치 않다.

이어 1906年(光武10年) 3月 21日 勅令 第12號 「銀行條例」와 함께 公布된 同第13號 「農工銀行條例」에 의하여 設立된 農工銀行이 최초로 設立된 株式會社이다. 즉 同條例 제1조는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韓末近代法令資料集(國會圖書館刊) IV, 434면.

農工銀行을 株式會社로 하고 資本金은 10萬圓, 一株의 金額은 20圓으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바, 이것이 會社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株式會社制度를 규정한 物체의 것으로, 앞의 私設鐵道條例보다는 구체적으로 規定되었으므로, 農工銀行 設立을 위한 特別立法이다.⁽²⁾ 다음으로 1908年(隆熙2年)에는 8月 26日에 法律 第22號로서 「東洋拓植株式會社法」이 制定公布되었는 바, 同法 第7 條는 「東洋拓植株式會社에 關하여는 잠시간 日本國株式會社에 關한 法規를 準用함」이라 規定하고, 同年 10月 27日 農商工部告示 第13호 「東洋拓植株式會社에 準用할 日本國法規(商法, 非訟事件手續法, 商業登記取扱規則, 登錄稅法, 登錄稅法施行規則, 印紙法)를 告示하는 件」에 의하여 日本法律中 東洋拓植株式會社에 準用된 法規의 譯文을 아울러告示하고 있는 바, 이것에 依하면, 日本商法 第9 條 내지 第35條(商號, 商業登記에 關한 規定), 第42條 내지 第48條(會社法通則規定), 第119條 내지 第262條(株式會社에 關한 規定)와, 非訟事件手續法中 會社에 關한 第126條 내지 第195條로 되어 있다.⁽³⁾

1905年에 乙巳保護條約이 締結되어 大朝鮮國이 實質적으로 日本의 屬國으로 化한 뒤에 바로소 農工銀行이 株式會社로서 設立되고, 1906年에 日本의 統監部가 設置되어 植民統治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東洋拓植株式會社라는 日本의 植民會社를 우리나라의 法律로 制定하고 이것에 日本의 會社法을 準用하게 된 것을 볼 때, 當時의 우리나라의 形便을 짐작할 수 있는 바, 나라가 亡해가는 과정에서 法的으로 나타난 것으로 실로 痛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會社라는 制度는 위와 같이하여 바뀐 되었다고 하지만, 會社라는 말과 實體는 일찍부터 存在하였던 것 같다. 즉 1894年(高宗31年) 7月 24日 議案「米商會社設立에 關한 件」은 「各道上納之許代純錢 行將關筋矣 米商會社 不容不函設 則部下米塵大行首及五江主人與買米坐賈熟諳商務者 並許合股結社 由農商衙門 特給官許文憑 安定規則 以便公納 兼興商務事」⁽⁴⁾라 하여 米穀商人들이 合하여 米商會社를 設立하도록하여 行政官廳과의 文書往來, 官의 統制 등을 쉽게 하고 商業을 興旺케 하고자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적힌 會社란 여러 商人들의 結合을 의미한 것이지 오늘의 會社의 概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 1895年 4月 19日 農商工部告示 第1號 「各會社로부터 官許章程과 商業憑票를 還收하는 件」을 보면, 「대저 會社라 呼는 것은 衆力을 合하여 資本을 鳩하여 商貨를 販하고 民利를 重히 行을 爲호야 設호는 기시어늘 商會라 呼고 痴始호 後로 群奸이 舞弊호고 百弊가 繁滋호미 前農商衙門이 去月에 告示를 揭호야 各會社의 持호 官許章程과⁽⁵⁾ 商業憑票를 刻即還納호라 호였시나 未納호 者가 多호니 事體를 撲호미 駭歎이 極호지라 本部에서 商瘡을 除코저

(2) 上揭資料集 Ⅳ, 527면.

(3) 上揭資料集 Ⅶ, 270면.

(4) 上揭資料集 Ⅰ, 78면에 譯文이 있음.

(5) 章程은 免許狀으로서 汽船會社章程(開國 498年 4月)이 비교적 오래된 것이다. 여기에 會社라는 것은 商社의 뜻이다. 奎章閣所藏.

하여 또 揭示하노니 各會社들은 此意를 體하여 章程과 憑票를 一一 還納하면 本部에서 그 實境을 確究하여 許否를 妥處하리니 或도 遲悞하여 抵하지 無홀지이라. 限十日이라고 하여 會社의 定義도 내리고 있는 것은 興味롭다. 즉 會社를 衆力을 合하여 資本을 鳩하여 商貨를 販하고 民利을 重히 하기 위하여 設立한 것이라고 한 대목도 表現은 다르나 할지라도 오늘의 會社定義와 비슷한 점이 있다. 「衆力을 合하여」라 함은 오늘의 表現을 빌린다면 「多數人이 結合하여」라는 뜻으로서 社團性을 나타내는 것이요, 「資本을 鳩하여」라는 것은 「資本에 대한 出資를 하고」라는 뜻으로서 財團性을 表示하는 것이요, 「商貨를 販하여」라 함은 一見 商品賣買의 뜻이기는 하나 오늘의 「商行爲를 目的으로 하고」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商行爲性 내지 營利性을 뜻하는 것이며, 「民利을 重히 하기 위하여」라는 것은 會社의 社會性 내지 公共性을 강조한 것으로서, 오늘의 會社法이 會社를 營利團體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한층 앞선 것으로서, 요사이 會社企業의 社會的責任이니 하여 그 公共性質과 社會的 性質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비추어 볼 때, 當時에 이미 會社의 그러한 面을 着眼하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上記 告示가 會社의 邊界를 막기 爲한데서 내려진 것임을 감안할 때 會社의 公共性이 강조된 것도 무리가 아니었던 것이다. 다만 이 會社라는 것이 오늘과 같은 法人도 아니요 또 어떠한 法律的 뒷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商人들의 結社, 오늘의 表現을 빌린다면 社團으로서 파악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會社와 一脈 相通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冊의 著者도 當時의 事情을 「我國에 在하여는 會社組織이 漸次 發達하야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非法律的인 組織으로서 會社가 상당히 많이 設立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冊의 著述年度는 적어도 1905年 以前の 것이라고 짐작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때에는 이미 私設鐵道條例에서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두고있으며, 다음해인 1906년에는 農工銀行條例에 의하여 農工銀行이라는 株式會社가 設立되고 있었는데도, 本書에는 이에 대한 言及이 없을 뿐더러 「此에 관련 法律의 制定은 尙無하고」라고 記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典當舖規則, 電氣會社條例, 銀行規則, 庖肆規則 等の 不完全한 單行法으로 處理함에 不過하」라고 하여 마치 이것들이 會社에 관한 單行法인 양 說明하고 있으나, 이 들중 庖肆規則은 오늘의 食肉商에 관한 團束規定이고 典當舖規則도 典當舖營業에 관한 行政法規이지 會社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⁶⁾ 다만 當時의 會社라는 概念이 오늘날과 같은 法的概念이 아니라 막연히 商社 또는 商會라는 의미로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넓은 의미로 記述한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음에는 이 冊이 어디에서 講義하기 위하여 講述된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

(6) 上揭資料集에는 典當舖規則이 아니라 一典當舖規則으로 되어 있으며, 電氣會社條例는 收錄되어 있지 않으며, 銀行規則도 銀行條例로서 收錄되어 있다.

제로 우리나라의 法官養成所에서의 教材로 쓰여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4年 12月 16日 當時의 法務大臣 徐光範이 法律學校設置를 上奏하는 奏文을 올리고, 다음해인 1895年 3月 25日 勅令 第49號로 法官養成所規程이 頒布됨으로써 法官養成所가 設立되었다. 同養成所는 卒業期限이 6個月이고(同規則 8조), 履修科目은 ① 法學通論, ② 民法, ③ 刑法, ④ 民事訴訟法, ⑤ 刑事訴訟法, ⑥ 其他現行法律, ⑦ 演習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時點에서는 아직 商法을 講述하지 않았던 것 같다. 當時의 教材로서 法學通論, 民法, 刑法, 民訴, 刑訴 등이 著述되고 있다.

1906年(光武10年) 3月 30日에 法部令 제 1호로써 法官養成所規則이 改正되고 그 제 2조에 의하면, 教科目이 刑法大全, 明律, 無冤錄, 法學通論, 憲法, 刑法, 民法, 商法, 刑事訴訟法, 民事訴訟法, 行政學, 國際法, 經濟學, 財政學, 外國語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商法도 履修科目이 되었으며, 따라서 會社法教材도 필요하게 되었고, 이 책도 그곳에서 教材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1906年 11月 6日에는 法部令 제 5호로 法官銓考細則이 制定되고, 考科目을 行政法大意 民事訴訟法, 民法, 刑法, 刑事訴訟法, 商法大意, 國際法大意, 經濟學大意로 定하여 商法도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08年 1月 17日에는 法部令 제 1호 法官養成所令이 새로 制定되어 修業年限이 3년이 되었으며, 同年 3月 6日 法部告示 제 5호로 法官養成所學則이 定해졌는 바, 그 제 1조는 教科目으로서 法學通論, 民法, 民事訴訟法 刑法, 刑事訴訟法, 商法, 國法學, 行政法, 國際公法, 國際私法, 明律, 理財學, 實務演習, 日本語, 漢文, 數學, 簿記, 體操 등을 羅列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冊은 이 法官養成所에서 教材로 쓰여졌을 것이다.

한편 이 冊의 出版社가 普成閣으로 되어 있는 바, 普成閣은 당시의 普成專門學校의 附設 出版社이고, 普成專門學校의 法律科目으로서 會社法이 들어가 있어 그곳에서 教材로 사용하였을 것으로도 짐작이 간다. 왜냐하면 講述者 李冕宇는 그 履歷으로 보아 普成專門學校나 法官養成所의 教授나 講師를 지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⁷⁾ 專門學校의 設置根據와 教育內容은 명확치 않으나 당시의 高等教育機關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 1895年 勅令 第46號의 學部官制 제 6조의 學務局所管事項중, ① 小學校及學齡兒童의 就學에 關하는 事項 ② 師範學校에 關하는 事項, ③ 中學校에 關하는 事項, ④ 外國語學校, 專門學校及 技藝學校에 關하는 事項, ⑤ 外國派遣하는 留學生에 關하는 事項으로 되어 있어 專門學校가 中學校의 上級學校임이 明白하다.

요컨대 이상의 모든 進展은 1894의 甲午更張期를 期하여 벌어진 것으로서, 當時의 法令公布의 내용을 보면 鎖國에서 開國開代로 치닫는 기쁜 時勢를 엿볼 수 있으며, 또 日本의 강력한 영향을 받으면서 차차 그 支配下에 들어가는 경위가 역역히 나타난다.⁽⁸⁾

(7) 註(9) 참조.

(8) 1876年 8月 24日에 調印된 韓日修好條規(江華條約) 이후에는 日本의 노골적인 간섭이 심해졌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1910년 합병과 더불어 그 다음해에 日本制令으로 施行된 이른바 朝鮮民事令에 의하여 日本商法이 依用된 때까지 끝내 獨自의인 商法을 갖지 못하였다.

II. 股本會社

冒頭에서 紹介된 李冕宇 講述의 會社法은 나에게 韓末當時의 會社制度를 살피게 하는 하나의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韓日合併에까지 會社法을 갖지 못하였고, 私設鐵道條例와 農工銀行條例에 의하여 株式會社에 관한 약간의 規定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日本이 韓國을 植民化하는 尖兵으로서의 朝鮮拓植株式會社를 設立하기 위한 朝鮮拓植株式會社法을 우리나라의 法律로서 定하면서, 日本商法을 準用하는 間接적인 立法을 함에 이르러서는 韓國人의 한사람으로서 낮이 붙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그 過去를 탓할들 무엇하리, 그러한 與件에서 會社法을 펴낸 先覺者인 李冕宇先生의 著述에 눈을 돌리기로 한다.

이 冊의 目次를 보면, 緒言에 이어 第1章 會社의 定義, 第2章 會社의 種類, 第3章 會社의 設立, 第4章 會社의 營業, 第5章 合名會社, 第6章 合資會社, 第7章 股本會社, 第8章 股本合資會社, 第9章 外國會社로 되어 있으며, 이는 當時의 日本에서 立法된 商法會社編의 規定順序를 따른 敘述方法이다. 李冕宇은 日本留學生으로 日本에서 法學을 修學한 者로서 그 記述도 日本에서의 講學本을 土臺로 한 것이 分明하다.⁽⁹⁾

그 記述內容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는 매우 유차하고, 參考될 만한 것이 없으나 다만 株式會社를 股本會社라고 하여 日本과 다른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그 獨自性을 어느정도 엿볼 수 있겠다고 하겠다. 이 책이 株式이니 株金이니 하는 用語를 사용한 私設鐵道條例나 農工銀行條例, 東洋拓植株式會社法이 施行되기 이전에 著述된 것으로 推定하는 것도 當時의 會社法을 설명하면서 故意로 株式이라는 用語를 버리고 股本이라는 用語를 썼을리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股本會社라고 이름붙인 株式會社에 관한 敘述部分에서 著者가 사용하고 있는 獨特한 用語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그 내용 的 敘述部分에는 特記할만한 것이 없다.

「股本會社는 資本을 股本에 分割하여 社員은 其所有한 股本의 金額을 限하여 責任을 負擔하는 會社—나…」라고 說明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株式이라고 하는 것을 股本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股字는 나눈다는 뜻이 있으므로 말하자면 資本을 나눈 것, 즉 資本을 分割한 것이라는 뜻이다. (I)에서 引用한 1894年 7月 24日 議案 「米商會社設立에 관한 件」에서 「並許合股結社」라고 한 것도 株式(出資)을 合하여 會社를 設立한

(9) 李冕宇는 全州人으로 日本東京慶應義塾普通科를 卒業한 뒤, 1899年 7月 1日 日本東京法學院大學 法律學科全科를 卒業하여, 1904年 漢城裁判所檢事試補를 歷任, 그후의 履歷은 未詳, 奎章閣所藏 「大韓帝國官員履歷書」所收.

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이 「股」라는 말이 著者の 獨創的 述語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미 日本에서 株式會社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不拘하고 股本會社라고 칭한 것은 분명 韓國의 獨自性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¹⁰⁾

그 밖에 株主를 「股本主」 또는 「股主」라고 하였으며 一株의 金額을 「一股」의 金額, 株券을 「股券」, 株金을 「股金」이라고 한 것은 株式을 股本이라고 한 것에 對應한 것이다. 또 株式의 「引受」를 股本의 「擔受」라 하였으며, 理事와 監事는 각기 總務員과 監督員이라고 表現하고 있는 바, 이는 日語인 取締役, 監査役이 마땅하지 않았던 탓일 것이다.

株金の 「拂込」을 股金の 「支入」이라 하였으며, 株式請約을 「股本請入」이라 하였다. 支入, 請入이 當時의 用語用法에 맞았던 모양이다. 數種의 株式을 發行한 경우의 種類株가 갖는 權利를 「種族權」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用語는 약간 어색한 점이 없지 않다.

株主總會는 「股主總會」 또는 「股本主總會」, 利益의 分配를 利益의 「分給」 또는 「分配」라고 하여 표현의 一貫性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法典이 없었던 예의 說明이므로 나무랄 것이 못된다.

이상 주로 用語上의 문제, 특히 株式을 股本이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奇異性 때문에 이 冊이 더욱 뜻모이는지도 모른다. 筆者가 1962年 當時 商法審議委員으로 있었던 때에 이 冊에 접하였던들 아마, 우리나라의 商法典의 用語, 특히 會社法의 用語는 오늘의 그것과 다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말이란 만들어지기 보다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80年前의 用語가 그대로 오늘의 感覺에 맞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稀貴한 冊子를, 특히 會社法에 관한 原初的著述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商法을 專攻하는 筆者로서는 매우 기쁜일이 아닐 수 없었으나, 著者가 苦心끝에 지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股本이라는 用語가 끝내 빛을 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10) 물론 中華民國 公司法에서 株式會社를 股份公司라고 稱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股字의 채택이 講述者의 獨創物은 아니겠으나, 이「股」를 資本의 「本」과 결합시킨 것은 그의 獨創的 아이디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